

『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
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권기만의원외 8인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의회소관 「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등 3건의 규칙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
- 지금까지 정비하지 못한 일부 문구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」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을 일괄 정비코자함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함(안 제1조 등)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」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 정비(안 제2조·제3조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

5. 검토의견

- 본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 미시의회의 3개의 관련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,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3개의 관련 규칙을 개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규칙안임.